

1. 의결주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의 현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2026. 9. 4.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제3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감사정원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10. 2.>

공소청별 감사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명)

직 위 청 별	계	검찰 총장	검 사										
			공소청 차장 검사, 광역 공소청장	공소청 검사, 지방공소청장,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지방공소청 지청 차장 검사, 지방 공소청 또는 지청 부장 검사, 광역 공소청 검사	지청장	공소청에 두는 부의 과장	공소청 연구관	기획관· 정책관· 담당관· 대변인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
합 계	2,292	1	7	30	4	23	26	333	16	16	31	15	1,790
공소청	70	1	1	6						16	31	15	
서울광역공소청	50		1	1	4			44					
대전광역공소청	12		1	1				10					
대구광역공소청	12		1	1				10					
부산광역공소청	16		1	1				14					
광주광역공소청	12		1	1				10					
수원광역공소청	16		1	1				14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63			1		3		27					232

서울동부지방공소청	72			1		1		10					60
서울남부지방공소청	109			1		2		13					93
서울북부지방공소청	71			1		1		8					61
서울서부지방공소청	64			1		1		8					54
의정부지방공소청	56			1		1		6					48
고양지청	42						1	5					36
남양주지청	21						1	2					18
인천지방공소청	114			1		2		11					100
부천시청	40						1	5					34
수원지방공소청	115			1		2		13					99
성남지청	47						1	5					41
여주지청	14						1	1					12
평택지청	25						1	3					21
안산지청	52						1	6					45
안양지청	34						1	4					29
춘천지방공소청	23			1		1		3					18
강릉지청	11						1	1					9
원주지청	16						1	2					13
속초지청	5								1				4
영월지청	5								1				4
대전지방공소청	76			1		1		9					65

홍성지청	10						1	1					8
공주지청	5								1				4
논산지청	6								1				5
서산지청	12						1	1					10
천안지청	35						1	4					30
청주지방공소청	42			1		1		4					36
충주지청	9						1	1					7
제천지청	5								1				4
영동지청	4								1				3
대구지방공소청	81			1		1		8					71
서부지청	35						1	4					30
안동지청	8								1				7
경주지청	9						1	1					7
포항지청	15						1	2					12
김천지청	16						1	2					13
상주지청	5								1				4
의성지청	4								1				3
영덕지청	4								1				3
부산지방공소청	84			1		1		10					72
동부지청	34						1	4					29
서부지청	33						1	4					28

울산지방공소청	54			1		1		7					45
창원지방공소청	45			1		1		6					37
마산지청	14						1	2					11
진주지청	15						1	2					12
통영지청	14						1	2					11
밀양지청	5								1				4
거창지청	4								1				3
광주지방공소청	73			1		1		8					63
목포지청	16						1	2					13
장흥지청	4								1				3
순천지청	31						1	4					26
해남지청	4								1				3
전주지방공소청	34			1		1		4					28
군산지청	17						1	2					14
정읍지청	6								1				5
남원지청	4								1				3
제주지방공소청	33			1		1		4					2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 법」 제2조에 따라 <u>검찰청별</u> 검 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소청별</u> --- ----- ---
제3조(정원) <u>검찰청별</u> 검사의 정 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u>공소청별</u> ----- -----.